

도시계획·개발 때 탄소중립 계획요소 반영 위해 규정 개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도시활력지원과
2021.12.28.

국토교통부는 지역과 도시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탄소중립 계획요소 등을 반영토록 하였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하였다. 또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수행하는 기초 조사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을 명시하였다.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수단, 예상 감축량 등을 담은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공간구조, 교통체계,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부문별 탄소중립 계획요소 세부 내용

공간구조	온실가스 현황지도, 건물 에너지 수요 지도, 흡수원 분포 등 탄소중립 관련 도시 현황 지도를 구축하여 공간구조 개편에 적용
교통체계	자전거·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녹색물류체계 계획 등
주거환경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 식재 등 주택 내 탄소흡수원 확충
에너지·폐기물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방안,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자원순환유도 등
공원·녹지	탄소흡수원 확충, 도심비람길 조성 등 열섬현상 완화 등

출처: 국토교통부, (2021).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 시 공간적 탄소중립 해법 검토, 12월 28일 보도자료.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고자 기초조사 때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신 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추가로 조사하고, 범위를 넓혀 신 재생에너지의 발전·이송·활용시설의 설치 여부까지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해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제로 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로 검토해 건축물 에너지의 소요량을 최소로 줄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의 통합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계획 단계에서 도시통합운영 센터 설치 또는 기존 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